베뉴브 해운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 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544-313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9.19.(금)	2025.09.29.(월)	2025.09.30.(화)	2025.10.01.(수)	2025.10.14.(화)	2025.10.18.(토)~ 10.22(수)	2025.10.27.(월)~ 10.29(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enuv.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9. (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 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 해당 지역 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 기타 지역 신청 가능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9.29.(월)	2025.09.30.(화)	2025.10.01.(수)	2025.10.14.(화)	2025.10.18.(토)~ 10.22(수)	2025.10.27.(월)~ 10.29(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7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 - 29742호(2025.09.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7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8층 3개동 총 660세대 중 토지등소유자 25세대, 보류지 6세대, 일반분양 629세대**
[특별공급 298세대(기관추천 50세대, 다자녀가구 62세대, 신혼부부 120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4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15	01	59.9833A	59A	59.9833	20.8471	80.8304	40.7166	121.5470	12.5698	24	2	2	6	1	2	13	11	0
	02	59.9833B	59B	59.9833	20.8491	80.8324	40.7139	121.5463	12.5560	1	0	0	0	0	0	0	1	1
	03	84.8937A	84A	84.8937	28.5059	113.3996	57.6257	171.0253	17.8063	92	9	9	21	3	8	50	42	2
	04	84.9043B	84B	84.9043	27.2411	112.1454	57.6329	169.7783	17.8006	91	9	9	21	3	8	50	41	2
	05	84.9190C	84C	84.9190	27.3447	112.2637	57.6430	169.9067	17.7944	134	13	13	31	4	12	73	61	3
	06	84.9898D	84D	84.9898	27.2618	112.2516	57.6910	169.9426	17.8021	44	4	5	10	1	4	24	20	1
	07	84.9637E	84E	84.9637	27.0241	111.9878	57.6732	169.6610	17.8053	135	13	13	31	4	13	74	61	3
	08	99.9479	99	99.9479	32.0276	131.9755	67.8445	199.8200	20.9502	108	0	11	0	3	0	14	94	3
	합 계									**629**	**50**	**62**	**120**	**19**	**47**	**298**	**331**	**15**

※ 각 주택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59A, 59B타입은 공유면적의 차이로 인해 타입이 구분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같으니 반드시 동호 배치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전기/기계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본 건물은 **아파트, 판매시설이 함께 계획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용도별 대지지분에 대해 대지분할,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대상의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84A	84B	84C	84D	84E	99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2	2	2	1	2	-	10
	장기복무제대군인	-	-	1	1	2	-	2	-	6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1	2	1	2	-	7
	중소기업근로자	-	-	1	1	1	-	1	-	4
	장애인(부산광역시)	1	-	4	4	6	2	6	-	2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	9	9	13	5	13	11	62
신혼부부 특별공급		6	-	21	21	31	10	31	-	12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3	3	4	1	4	3	19
생애최초 특별공급		2	-	8	8	12	4	13	-	47
합 계		**13**	**-**	**50**	**50**	**73**	**24**	**74**	**14**	**29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 (라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계약금	2차계약금 (30일이내)	합계	2026.06.05.	2026.11.05.	2027.05.05.	2027.11.05.	2028.05.05.	2028.11.05.	입주지정일
59A	103동 5호	3-4층	2	325,962,000	509,838,000	-	835,800,000	20,000,000	21,790,000	41,79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292,530,000
		5-9층	5	329,784,000	515,816,000	-	845,600,000	20,000,000	22,280,000	42,280,000	84,560,000	84,560,000	84,560,000	84,560,000	84,560,000	84,560,000	295,960,000
		10-14층	5	333,957,000	522,343,000	-	856,300,000	20,000,000	22,815,000	42,815,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85,630,000	299,705,000
		15-19층	5	338,169,000	528,931,000	-	867,100,000	20,000,000	23,355,000	43,355,000	86,710,000	86,710,000	86,710,000	86,710,000	86,710,000	86,710,000	303,485,000
		21-25층	5	343,122,000	536,678,000	-	879,800,000	20,000,000	23,990,000	43,99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307,930,000
		26-27층	2	344,760,000	539,240,000	-	884,000,000	20,000,000	24,200,000	44,2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309,400,000
59B	103동 5호	2층	1	322,140,000	503,860,000	-	826,000,000	20,000,000	21,300,000	41,3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289,100,000
84A	101동 5호, 102동 5호	2층	2	492,063,000	769,637,000	-	1,261,700,000	20,000,000	43,085,000	63,085,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441,595,000
		3-4층	4	497,406,000	777,994,000	-	1,275,400,000	20,000,000	43,770,000	63,770,000	127,540,000	127,540,000	127,540,000	127,540,000	127,540,000	127,540,000	446,390,000
		5-9층	10	502,749,000	786,351,000	-	1,289,100,000	20,000,000	44,455,000	64,455,000	128,910,000	128,910,000	128,910,000	128,910,000	128,910,000	128,910,000	451,185,000
		10-14층	10	508,638,000	795,562,000	-	1,304,200,000	20,000,000	45,210,000	65,21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456,470,000
		15-19층	10	514,527,000	804,773,000	-	1,319,300,000	20,000,000	45,965,000	65,965,000	131,930,000	131,930,000	131,930,000	131,930,000	131,930,000	131,930,000	461,755,000
		21-25층	10	521,469,000	815,631,000	-	1,337,100,000	20,000,000	46,855,000	66,855,000	133,710,000	133,710,000	133,710,000	133,710,000	133,710,000	133,710,000	467,985,000
		26-30층	10	524,940,000	821,060,000	-	1,346,000,000	20,000,000	47,300,000	67,3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471,100,000
		31-35층	10	528,450,000	826,550,000	-	1,355,000,000	20,000,000	47,750,000	67,75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474,250,000
		36-40층	10	530,322,000	829,478,000	-	1,359,800,000	20,000,000	47,990,000	67,99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475,930,000
		41-44층	8	532,701,000	833,199,000	-	1,365,900,000	20,000,000	48,295,000	68,295,000	136,590,000	136,590,000	136,590,000	136,590,000	136,590,000	136,590,000	478,065,000
		45-48층	8	534,846,000	836,554,000	-	1,371,400,000	20,000,000	48,570,000	68,570,000	137,140,000	137,140,000	137,140,000	137,140,000	137,140,000	137,140,000	479,990,000
84B	101동 1호, 102동 1호	2층	1	500,643,000	783,057,000	-	1,283,700,000	20,000,000	44,185,000	64,185,000	128,370,000	128,370,000	128,370,000	128,370,000	128,370,000	128,370,000	449,295,000
		3-4층	4	505,869,000	791,231,000	-	1,297,100,000	20,000,000	44,855,000	64,855,000	129,710,000	129,710,000	129,710,000	129,710,000	129,710,000	129,710,000	453,985,000
		5-9층	10	511,095,000	799,405,000	-	1,310,500,000	20,000,000	45,525,000	65,525,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131,050,000	458,675,000
		10-14층	10	516,867,000	808,433,000	-	1,325,300,000	20,000,000	46,265,000	66,265,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463,855,000
		15-19층	10	522,639,000	817,461,000	-	1,340,100,000	20,000,000	47,005,000	67,005,000	134,010,000	134,010,000	134,010,000	134,010,000	134,010,000	134,010,000	469,035,000
		21-25층	10	529,464,000	828,136,000	-	1,357,600,000	20,000,000	47,880,000	67,88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135,760,000	475,160,000
		26-30층	10	532,857,000	833,443,000	-	1,366,300,000	20,000,000	48,315,000	68,315,000	136,630,000	136,630,000	136,630,000	136,630,000	136,630,000	136,630,000	478,205,000
		31-35층	10	536,289,000	838,811,000	-	1,375,100,000	20,000,000	48,755,000	68,755,000	137,510,000	137,510,000	137,510,000	137,510,000	137,510,000	137,510,000	481,285,000
		36-40층	10	538,122,000	841,678,000	-	1,379,800,000	20,000,000	48,990,000	68,990,000	137,980,000	137,980,000	137,980,000	137,980,000	137,980,000	137,980,000	482,930,000
		41-44층	8	540,462,000	845,338,000	-	1,385,800,000	20,000,000	49,290,000	69,290,000	138,580,000	138,580,000	138,580,000	138,580,000	138,580,000	138,580,000	485,030,000
		45-48층	8	541,827,000	847,473,000	-	1,389,300,000	20,000,000	49,465,000	69,465,000	138,930,000	138,930,000	138,930,000	138,930,000	138,930,000	138,930,000	486,255,000
84C	101동 3호	5-9층	5	494,559,000	773,541,000	-	1,268,100,000	20,000,000	43,405,000	63,405,000	126,810,000	126,810,000	126,810,000	126,810,000	126,810,000	126,810,000	443,835,000
	102동 3호	3-4층	2	489,333,000	765,367,000	-	1,254,700,000	20,000,000	42,735,000	62,735,000	125,470,000	125,470,000	125,470,000	125,470,000	125,470,000	125,470,000	439,145,000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별도금액 101동 3호 5-9층, 102동 3호 3-4층	2층	1	493,272,000	771,528,000	-	1,264,800,000	20,000,000	43,240,000	63,240,000	126,480,000	126,480,000	126,480,000	126,480,000	126,480,000	126,480,000	442,680,000
		3-4층	2	498,537,000	779,763,000	-	1,278,300,000	20,000,000	43,915,000	63,915,000	127,830,000	127,830,000	127,830,000	127,830,000	127,830,000	127,830,000	447,405,000
		5-9층	10	503,802,000	787,998,000	-	1,291,800,000	20,000,000	44,590,000	64,590,000	129,180,000	129,180,000	129,180,000	129,180,000	129,180,000	129,180,000	452,130,000
		10-14층	15	509,574,000	797,026,000	-	1,306,600,000	20,000,000	45,330,000	65,330,000	130,660,000	130,660,000	130,660,000	130,660,000	130,660,000	130,660,000	457,310,000
		15-19층	15	515,346,000	806,054,000	-	1,321,400,000	20,000,000	46,070,000	66,070,000	132,140,000	132,140,000	132,140,000	132,140,000	132,140,000	132,140,000	462,490,000
		21-25층	15	522,171,000	816,729,000	-	1,338,900,000	20,000,000	46,945,000	66,945,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468,615,000
		26-30층	15	525,564,000	822,036,000	-	1,347,600,000	20,000,000	47,380,000	67,380,000	134,760,000	134,760,000	134,760,000	134,760,000	134,760,000	134,760,000	471,660,000
		31-35층	15	528,957,000	827,343,000	-	1,356,300,000	20,000,000	47,815,000	67,815,000	135,630,000	135,630,000	135,630,000	135,630,000	135,630,000	135,630,000	474,705,000
		36-40층	15	530,829,000	830,271,000	-	1,361,100,000	20,000,000	48,055,000	68,055,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476,385,000
		41-44층	12	533,169,000	833,931,000	-	1,367,100,000	20,000,000	48,355,000	68,355,000	136,710,000	136,710,000	136,710,000	136,710,000	136,710,000	136,710,000	478,485,000
		45-48층	12	535,275,000	837,225,000	-	1,372,500,000	20,000,000	48,625,000	68,625,000	137,250,000	137,250,000	137,250,000	137,250,000	137,250,000	137,250,000	480,375,000
84D	103동 1호	2층	1	501,111,000	783,789,000	-	1,284,900,000	20,000,000	44,245,000	64,245,000	128,490,000	128,490,000	128,490,000	128,490,000	128,490,000	128,490,000	449,715,000
		3-4층	2	506,337,000	791,963,000	-	1,298,300,000	20,000,000	44,915,000	64,915,000	129,830,000	129,830,000	129,830,000	129,830,000	129,830,000	129,830,000	454,405,000
		5-9층	5	511,602,000	800,198,000	-	1,311,800,000	20,000,000	45,590,000	65,59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131,180,000	459,130,000
		10-14층	5	517,374,000	809,226,000	-	1,326,600,000	20,000,000	46,330,000	66,330,000	132,660,000	132,660,000	132,660,000	132,660,000	132,660,000	132,660,000	464,310,000

		15-19층	5	523,146,000	818,254,000	-	1,341,400,000	20,000,000	47,070,000	67,070,000	134,140,000	134,140,000	134,140,000	134,140,000	134,140,000	134,140,000	469,490,000
		21-25층	5	529,971,000	828,929,000	-	1,358,900,000	20,000,000	47,945,000	67,945,000	135,890,000	135,890,000	135,890,000	135,890,000	135,890,000	135,890,000	475,615,000
		26-30층	5	533,364,000	834,236,000	-	1,367,600,000	20,000,000	48,380,000	68,380,000	136,760,000	136,760,000	136,760,000	136,760,000	136,760,000	136,760,000	478,660,000
		31-35층	5	536,796,000	839,604,000	-	1,376,400,000	20,000,000	48,820,000	68,820,000	137,640,000	137,640,000	137,640,000	137,640,000	137,640,000	137,640,000	481,740,000
		36-40층	4	538,629,000	842,471,000	-	1,381,100,000	20,000,000	49,055,000	69,055,000	138,110,000	138,110,000	138,110,000	138,110,000	138,110,000	138,110,000	483,385,000
		41-44층	4	540,969,000	846,131,000	-	1,387,100,000	20,000,000	49,355,000	69,355,000	138,710,000	138,710,000	138,710,000	138,710,000	138,710,000	138,710,000	485,485,000
		45-47층	3	543,075,000	849,425,000	-	1,392,500,000	20,000,000	49,625,000	69,625,000	139,250,000	139,250,000	139,250,000	139,250,000	139,250,000	139,250,000	487,375,000
84E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2층	2	488,592,000	764,208,000	-	1,252,800,000	20,000,000	42,640,000	62,640,000	125,280,000	125,280,000	125,280,000	125,280,000	125,280,000	125,280,000	438,480,000
		3-4층	4	493,857,000	772,443,000	-	1,266,300,000	20,000,000	43,315,000	63,315,000	126,630,000	126,630,000	126,630,000	126,630,000	126,630,000	126,630,000	443,205,000
		5-9층	15	499,161,000	780,739,000	-	1,279,900,000	20,000,000	43,995,000	63,995,000	127,990,000	127,990,000	127,990,000	127,990,000	127,990,000	127,990,000	447,965,000
		10-14층	15	504,933,000	789,767,000	-	1,294,700,000	20,000,000	44,735,000	64,735,000	129,470,000	129,470,000	129,470,000	129,470,000	129,470,000	129,470,000	453,145,000
		15-19층	15	510,744,000	798,856,000	-	1,309,600,000	20,000,000	45,480,000	65,48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458,360,000
		21-25층	15	517,647,000	809,653,000	-	1,327,300,000	20,000,000	46,365,000	66,365,000	132,730,000	132,730,000	132,730,000	132,730,000	132,730,000	132,730,000	464,555,000
		26-30층	15	521,079,000	815,021,000	-	1,336,100,000	20,000,000	46,805,000	66,805,000	133,610,000	133,610,000	133,610,000	133,610,000	133,610,000	133,610,000	467,635,000
		31-35층	15	524,511,000	820,389,000	-	1,344,900,000	20,000,000	47,245,000	67,245,000	134,490,000	134,490,000	134,490,000	134,490,000	134,490,000	134,490,000	470,715,000
		36-40층	15	526,344,000	823,256,000	-	1,349,600,000	20,000,000	47,480,000	67,48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134,960,000	472,360,000
		41-44층	12	528,723,000	826,977,000	-	1,355,700,000	20,000,000	47,785,000	67,785,000	135,570,000	135,570,000	135,570,000	135,570,000	135,570,000	135,570,000	474,495,000
		45-48층	12	530,829,000	830,271,000	-	1,361,100,000	20,000,000	48,055,000	68,055,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136,110,000	476,385,000
99	101동 2호	5-9층	5	593,145,000	928,050,000	92,805,000	1,614,000,000	20,000,000	60,700,000	80,700,000	161,400,000	161,400,000	161,400,000	161,400,000	161,400,000	161,400,000	564,900,000
	102동 2호	3-4층	2	587,301,750	918,907,500	91,890,750	1,598,100,000	20,000,000	59,905,000	79,905,000	159,810,000	159,810,000	159,810,000	159,810,000	159,810,000	159,810,000	559,335,000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별도금액 101동 2호 5-9층, 102동 2호 3-4층	2층	1	592,410,000	926,900,000	92,690,000	1,612,000,000	20,000,000	60,600,000	80,600,000	161,200,000	161,200,000	161,200,000	161,200,000	161,200,000	161,200,000	564,200,000
		3-4층	2	598,290,000	936,100,000	93,610,000	1,628,000,000	20,000,000	61,400,000	81,400,000	162,800,000	162,800,000	162,800,000	162,800,000	162,800,000	162,800,000	569,800,000
		5-9층	10	604,133,250	945,242,500	94,524,250	1,643,900,000	20,000,000	62,195,000	82,195,000	164,390,000	164,390,000	164,390,000	164,390,000	164,390,000	164,390,000	575,365,000
		10-14층	15	610,601,250	955,362,500	95,536,250	1,661,500,000	20,000,000	63,075,000	83,075,000	166,150,000	166,150,000	166,150,000	166,150,000	166,150,000	166,150,000	581,525,000
		15-19층	15	617,069,250	965,482,500	96,548,250	1,679,100,000	20,000,000	63,955,000	83,955,000	167,910,000	167,910,000	167,910,000	167,910,000	167,910,000	167,910,000	587,685,000
		21-25층	15	624,676,500	977,385,000	97,738,500	1,699,800,000	20,000,000	64,990,000	84,990,000	169,980,000	169,980,000	169,980,000	169,980,000	169,980,000	169,980,000	594,930,000
		26-30층	13	628,498,500	983,365,000	98,336,500	1,710,200,000	20,000,000	65,510,000	85,510,000	171,020,000	171,020,000	171,020,000	171,020,000	171,020,000	171,020,000	598,570,000
		31-35층	5	632,320,500	989,345,000	98,934,500	1,720,600,000	20,000,000	66,030,000	86,030,000	172,060,000	172,060,000	172,060,000	172,060,000	172,060,000	172,060,000	602,210,000
		36-40층	5	634,341,750	992,507,500	99,250,750	1,726,100,000	20,000,000	66,305,000	86,305,000	172,610,000	172,610,000	172,610,000	172,610,000	172,610,000	172,610,000	604,135,000
		41-44층	12	636,987,750	996,647,500	99,664,750	1,733,300,000	20,000,000	66,665,000	86,665,000	173,330,000	173,330,000	173,330,000	173,330,000	173,330,000	173,330,000	606,655,000
		45-48층	8	639,192,750	1,000,097,500	100,009,750	1,739,300,000	20,000,000	66,965,000	86,965,000	173,930,000	173,930,000	173,930,000	173,930,000	173,930,000	173,930,000	608,755,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동, 2동, 3동 20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대지지분포함)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판매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 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품목)의 금액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추후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용도로 납부하는 금액에서 우선 연체료가 공제되고, 연체료 공제 후 잔액으로 미납 계약금 또는 중도금 원금이 납부 순서에 따라 차감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납부일) 이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을 입주 또는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및 고지서상의 명의 여부에 관련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자의 제세공과금 등 제반 금액 납부 불이행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법원명령,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인허가청이나 교육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

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 4호에 따른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할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의 법인이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히고 응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주택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단, 납부기일 이전에 선 납부한 금액 중 납부기일이 사업주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제외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m², 84Bm², 99m²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청약신청시 공급안내문(안내자료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able>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able></td></tr>
</table>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2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범위 : 4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①무주택기간</td><td>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able></td></tr>
</table>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9.29.(월) 09:00~17:30**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현장접수는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74**
일반공급	**1순위**	**2025.09.30.(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10.01.(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0.14.(화) ~ 2025.10.23(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0.1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발표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일	확인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당첨자	**2025.10.14.(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당첨자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명단은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 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안내

구 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장 소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10.18.(토) ~ 2025.10.22.(수) (10:00~17:00) 5일간	베뉴브 해운대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74)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베뉴브 해운대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3> 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3>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중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및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 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공고일 이전 (국민연금 미가입자)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위촉증명서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서 ② 견본주택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② 해당직장,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 <표2>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가 아닌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3)

1. 군복무중이여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표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td></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베뉴브 해운대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장애인등록증	본인 및 세대원	•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인 경우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경우 - 추첨제 당첨된자 중 우선공급(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으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광역시 적용)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가점산정 기준표	보인	• 신청 가점 확인(견본주택에 비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는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 · 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당첨자, 일반공급 당첨자)	**25.10.27.(월) ~ 25.10.29(수) (10:00 ~ 16:00) 3일간**	**베뉴브 해운대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74)	**☎ 051-544-3131**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상기 납부계좌에 1,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13-2019-7045-03	㈜아이브이신라 김기덕

※ 상기 납부계좌를 정확히 확인 후 입금해야 하며, 상기 납부계좌에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201홍길동)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베뉴브 해운대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추가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본인	•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인지세 납부 • 해당 세액구간의 수입인지 세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전자수입인지 원본 제출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는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방식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선택옵션(유상)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계약, 발코니 계약, 선택옵션(유상) 계약의 계약일은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 및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나,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지정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체결시	입주시
59A / 59B	16,000,000	1,600,000	14,400,000
84A / 84B / 84C / 84D / 84E	22,000,000	2,200,000	19,800,000
99	26,000,000	2,600,000	23,40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잔금)	부산은행	113-2019-7055-05	㈜삼한종합건설 김희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은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시 무상제공)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설치위치	비고 (제조사)
전타입	4개소(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프리미엄+UV살균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계약 시 무상제공 되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카세트형으로, WI-FI 내장형 판넬이 적용된 제품으로 제조사에 따라 WI-FI 연동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평형에 맞는 용량제품이 설치됩니다.
※ 옵션 시 제안한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는 제조사의 도산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설치위치, 용량 등이 평형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전등 위치 등이 이동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세대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에어컨 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시공되지 않으며, 옵션금액은 에어컨 매립배관 비용을 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제조사 및 모델명)
			계약체결시	입주시	
전기 오븐	전타입	3,300,000	330,000	2,970,000	디트리쉬 / DKC4756 기본 : 삼성전자 / NQ50T8539BK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전타입	6,500,000	650,000	5,850,000	삼성전자 / RR40C8995APG RZ34C8865APG RQ34C8945APG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타입	1,650,000	165,000	1,485,000	삼성전자 / DW99F79E1B00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선택 시 식기 세척기의 외부 마감은 아일랜드 장 마감재와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99타입은 빌트인 식기세척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아일랜드 장 사이즈가 본 공사 시 변경될 예정입니다.(견본주택 POP 확인)

3) 침실 바닥 마감재 특화(친환경 마감재)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체결시	잔금(90%) 입주시	비고 (제조사 및 모델명)
1안(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	59A/B	1,200,000	120,000	1,080,000	포보코리아 / 리노마루 TITANIUM
	84A/B/C/D/E	1,500,000	150,000	1,350,000	
	99	1,700,000	170,000	1,530,000	
2안(침실2+침실3)	59A/B	600,000	60,000	540,000	
	84A/B/C/D/E	800,000	80,000	720,000	
	99	800,000	80,000	720,000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옵션 외 각실별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 무상 선택형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선택형		비고
전타입	주방, 거실(복도) 바닥 마감재 특화	1안	원목마루	원목마루(165x1205x10T)
		2안	외산 포세린 타일	외산 포세린 타일(600x1200)
전타입	침실2, 침실3 가변형 벽체 특화	1안	구분 벽체 설치	침실2, 침실3 개별사용
		2안	구분 별체 미설치	침실2, 침실3 통합사용

※ 상기 무상 선택형 품목은 필수로 시공 품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에 따른 공급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공사금액 납부 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금액 납부계좌 (계약금,잔금)	**부산은행**	**113-2019-7049-09**	㈜아이브이신라 김기덕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공사대금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 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11 단지 여건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철근, 시멘트 등 자재 대란으로 인한 수급 부족, 조사된 지반(또는 지질)과 실제 지반(또는 지질)이 상이하여 설계 또는 인·허가 변경 등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학교,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은 강동초에 배정되며, 중학교는 해강중, 해운대중, 해운대여중으로 배치되며,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증대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인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입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철도,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원, 공공용지, 완충녹지, 공영주차장,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허가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무산,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건강권,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본 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택법」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판매시설(근생상가)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미분양 분 추가 판촉 및 할인 조건 포함)
- 본 아파트의 명칭, 브랜드로고,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 결과와 시공사 토탈 디자인 기준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중 시공성능 향상을 위한 토목, 구조 공법의 변경 등 추가 심의 및 인허가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상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설계 변경사항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근생상가)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집합설치(상가, 부대시설용),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공간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며,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및 관리비용,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또는 환기가 용이한 시설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시공사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집기, 가구는 기본적인 품목만 제공되며,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주체에 따른 입주민들이 자체적 유지, 관리운영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옵션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판매시설의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집합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분리수거장은 아파트 3개소 및 판매시설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수집운반차량 동선, 보행 안전등을 고려하여 동별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1층 음식물처리시설로 악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근생상가)의 옥상 및 시설 인근에 실외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 각종 광고, 모형,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공급안내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인접 대지와의 고저차, 인접 대지 단차 부위의 옹벽, 조경석 처리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유상옵션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과 유상옵션상품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베뉴브 해운대에 제공되는 주거서비스, 플랫폼, 비서서비스는 시공사인 ㈜삼한종합건설과 (주)에스엘플랫폼의 공동주택 통합 서비스 PM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에스엘플랫폼이 수행하며, 계약 및 운영 기간은 1년이고, 모든 서비스는 입주민 부담 원칙으로 유상 제공된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 전용 앱(APP)의 개발 및 운영권은 (주)에스엘플랫폼에게 있고 계약기간 동안 입주민은 본 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만료 시 앱의 소유 및 운영권은 (주)에스엘플랫폼에게 귀속된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단차 계획, 포장 계획, 인접 대지와의 고저차, 인접 대지 단차 부위의 옹벽, 조경석 처리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의 사항에 따라 방음벽의 추가 설치, 형태,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상옵션 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석, 천연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호수별 차이가 있으며,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문주, 쓰레기 분리수거함, 상가용 천창, 정압실, 자전거보관대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대지와의 고저차에 따라 단차 처리를 위한 옹벽, 경사 구간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키큰장은 냉장고장의 선택과 가전 유상옵션에 따라,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합니다.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대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공과 무관하며, 본공사 시에는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실별 설치 위치, 형식,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가스입상관, 우수입상관, 배수입상관, 바닥배수구, 욕실 위생기기, 악세사리, 수전류, 스프링클러헤드, 시스템에어컨, 보일러, 복합환풍기, 드레스룸 제습기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통합터치 스위치
- 견본주택에는 **84A, 84B, 99**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형태, 색상, 재질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시계획시설(회전교차로 등)은 허가관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 및 한전패드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합터치 스위치,, 욕실스피커폰,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하향식 피난구는 본 공사시 주택형별 피난사다리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 여건

- 당해 지구 내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중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결정도, 실시계획인가의 변경,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주변 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구역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인허가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옹벽, 방음벽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단지와 관련한 각종 평가(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구역 내 기부채납 등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전면공지, 완충녹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구역 내 인근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사업지구 서측으로 광안대교로 연결되는 우동고가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방음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 방음효과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협의를 거쳐 저감시설의 제원, 형식 등을 결정하여 방음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과 인접(27m 이내)하고 지하철도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는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구역 북측은 철도 선로와 인접하여(17m 이내)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의 현황 등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아파트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지하철 위치, 철도, 문화재,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위치 및 현황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여건(현장답사, 위성사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인접한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부 여건

[단지배치 및 지상부]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재질,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에 석축 또는 옹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석축 또는 옹벽의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실시공 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문주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각종 시설물(DA, 쓰레기분리수거함, 재활용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외부계단 등) 및 마감재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에 따라 위치, 형태, 크기,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지하 1층~지하 4층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실시공 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지상2층은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지하1층은 골프연습장, 지하2층은 피트니스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소방차량 정차공간 확보 및 공기안전매트 보관함,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을 위해 보도 및 조경, 바닥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근생상가)의 입점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의 건축물 신축, 동간 또는 세대간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설계변경, 계약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근생상가)은 주변 레벨에 따라 접근 동선, 계단, 경사로, 위치, 레벨 등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근생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 및 옥탑 상부에는 실외기 등의 관련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배기 등의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휀룸의 급기/배기, 발전기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설치되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인근 외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출입구는 101동 인근 서측(판매시설출입구)과 103동 인근 동측(주출입구)에 공동주택용 차량출입구가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접 필지와 맞닿은 당 대지경계의 조경 및 토목관련 사항(공법, 자재, 난간, 선형, 레벨, 단차 부위의 옹벽, 조경석 처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판매시설(근생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BI, 일부 세대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최상층 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청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에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단, 경사로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이동, 추가설치 요청의 민원은 받지 않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지하 세대창고까지의 거리는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장소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인근 세대의 악취 및 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위치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 설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각 주동별 소방 제연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후면쪽에 설치될 예정이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는 입주시 단지내 비상차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외부 난간 설치계획(자재, 형태,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실,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도로(우동고가교포함)와 관련하여 발생 할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 또는 민원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으로 주택건설기준 제7조(적용의 특례)에 따라 공공주택 소음기준[65db(A)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 101동(우동고가교 및 해운대로측)은 고층부(6층 이상)에서 65db(A) 이상[최대 75db(A)]의 소음도가 예측되며, 특히 103동(해운대로측)의 경우 전층에서 공동주택 소음기준[65db(A) 미만]을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주동]
- 최상층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측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탑층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동주택 외벽 등에 따른 빛의 산란,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배치계획상 층별 면적 축소타입의 배치로 인한 자연 발생되는 하부층의 지붕 옥외 공간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니며, 이동 동선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로 인하여 하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일부층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 및 층별 면적 축소타입의 배치로 인한 상부 지붕이 존재하는 일부세대에는 상부 지붕 외부 우,배수 관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세대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은 판매시설(근생상가) 및 판매시설(근생상가) 주차장이 인접하여 이에 따른 소음, 진동,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은 우동고가교가 인접하여 이에 따른 소음, 진동,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근생상가) 옥상층에 방음벽이 설치됨으로 인해 101동, 102동 저층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용 엘리베이터의 형태, 면적, 채광 및 환기 등은 세대 조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지상 1층에 환기구(기계실, 휀룸, 제연휀룸 등)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인근에 차량진출입구와 인접하며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 소음, 차량출입 경고음 및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및 103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향별, 층별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옥상은 인허가 및 건축, 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형태, 높이, 마감 및 색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사용이 불가하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 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창호 및 실외기실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바닥마감 등),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저층 및 최상층 일부 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운행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 지하주차장에는 기계실, 전기실, 제연휀룸 등 단지 운용을 위한 설비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장비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은 추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근생상가) 인근, 옥상에는 실외기 등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의 주거환경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수취함은 지상 출입구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추후 본 공사 시 위치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모형에 반영된 아파트 출입구는(지상 정상 주동출입구, 필로티 진입 출입구) 주변 조경, 보행도로 등 시공계획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용부, PS&AV, 세대)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 1층, 2층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은 당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해운대구청 관할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하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4층,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103동 옆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서측 판매시설(근생상가) 주차구획(지하 1층)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철(벡스코역)로 출입은 지하 층 판매시설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이동에 제약(101동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동불가)이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이용시 주동간 주차불균형(101동 지하 1층 주차장 이용불가)/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관련도서 등의 열람 또는 상담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이 진입가능한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 주차장이며(101동 택배보관함-지하2층, 102동 및 103동 택배보관함-지하1층) 출입구 높이와 차로 유효높이는 2.7m이상, 주차구간의 높이는 2.3m이하,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택배보관함의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별로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구조물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최저 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휀 등의 설비가 노출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휀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충전)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획이 설치되며, 동별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설계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 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및 102동, 103동 인근 지하 1층 ~ 지하 4층에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물탱크실 등의 설비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가동 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인입될 수 있고 악취 등의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 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근생상가)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물탱크실/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면]

- 인허가 과정 및 승인의 내용, 옥외 광고 심의에 따라 측벽 사인물 위치 및 디자인, 단지 명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구간 및 경관조명 구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색채 및 줄눈 및 외부 옥상구조물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구조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모형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장식물(구조물)이 설치되는 세대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 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면, 배면, 측면, 코어에 대한 줄눈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 크기,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마감의 구간 및 종류는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도장이 혼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에 적용되는 토탈디자인, 외관 디자인, 마감사양 등은 시공사의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침변경에 따른 심의 및 각종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BI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본 주택에 시공되는 실외기 설치공간에 실외기 그릴 루버가 설치됩니다.
- 일부 타입세대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의 외부창호는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설치되며 창호의 형태, 위치, 크기, 상하부 턱의 높이, 제품의 사양등이 변경될 수 있고 해당세대는 반드시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9타입 거실 창문(2개소)에는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전동식 집광채광루버(실내형)가 시공됩니다.
- 99타입 주방 아일랜드 하부장은 견본주택에 시공되어있는 견본과 다르게 본공사 시 하부장 사이즈가 변경될 예정이며, 빌트인 식기세척기 추가 유상옵션을 선택하거나, 별도 구매한 식기세척기 등도 시공됩니다. (빌트인 식기 세척기 표준 기준 사이즈에 한함)
- 실시공시, 사업승인 변경 과정에 의하여 단위세대 창호 사이즈, 형태, 높이, 개폐방향, 마감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도어는 본공사시, 사업승인 변경 과정에 의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사용성을 위하여 욕실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바닥단차(높은단, 낮은단) 위치와 형태는 사용성 향상과 각종 공사를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외 가스기기 사용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은 없으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상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급탕,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장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형태, 크기, 위치, 색상, 열림 방향, 사양 등은 본 공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바닥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계약자는 안전에 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 화재감지기, 스피커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가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위치,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전열교환기(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열교환기(환기유니트) 유지보수비는 입주자 부담이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설치공간 및 다용도실, 발코니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난간,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다용도실(세탁기실)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섀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난간(콘크리트 난간)의 높이와 샤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창호 종류, 높이, 컬러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바닥, 샤워부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에는 상부 지붕 및 외부 발코니의 우,배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침실3 가변형 벽체특화(구분벽체 미설치) 선택 시 전기 분전함, 콘센트, 통신수구의 위치가 변경되며, 시공위치를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위치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위치 및 종류, 수량, 포장 패턴 및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 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담장개방 구간이 있는 경우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수 등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조경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에 따라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추가 설치,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조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축물의 외벽 및 옥상에 낙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 통신 중계기, 태양광 발전 설비, 헬리포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지 내 의장용 구조물, 이동통신중계기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등) 이용소음 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우수조,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가용 천창,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1층 지상층에는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 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 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판상형과 탑상형 주동배치 형태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등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근생상가)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내부 레이아웃 및 외부 디자인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옥상 난간 형태(타입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및 최상층 세대의 층고는 기준층 세대와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실 사이즈의 변경으로 코어 상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기계실,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입주관련 안내 및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9년 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경로당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법정대수 : 총 761대 (공동주택 709대, 판매시설(근생상가) 52대)**
- **설치대수 : 총 936대 (공동주택 858대, 판매시설(근생상가) 78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2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지하 4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택배차량이 진입가능한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 주차장이며(101동 택배보관함-지하2층, 102동 및 103동 택배보관함-지하1층) 출입구 높이와 차로 유효높이는 2.7m이상, 주차구간의 높이는 2.3m이하,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택배보관함의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건축물의 내진설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Ⅶ-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최대지반가속도
MMI Ⅶ등급	**0.173g**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2호 기준입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적용여부	검토항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인증받은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호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우동2 재개발정비구역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2. 신 청 자 : (주)아이브이신라
3.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74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 · 성토량(발생량 · 투입가급 한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주택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중수의 이용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저탄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공동·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인증제도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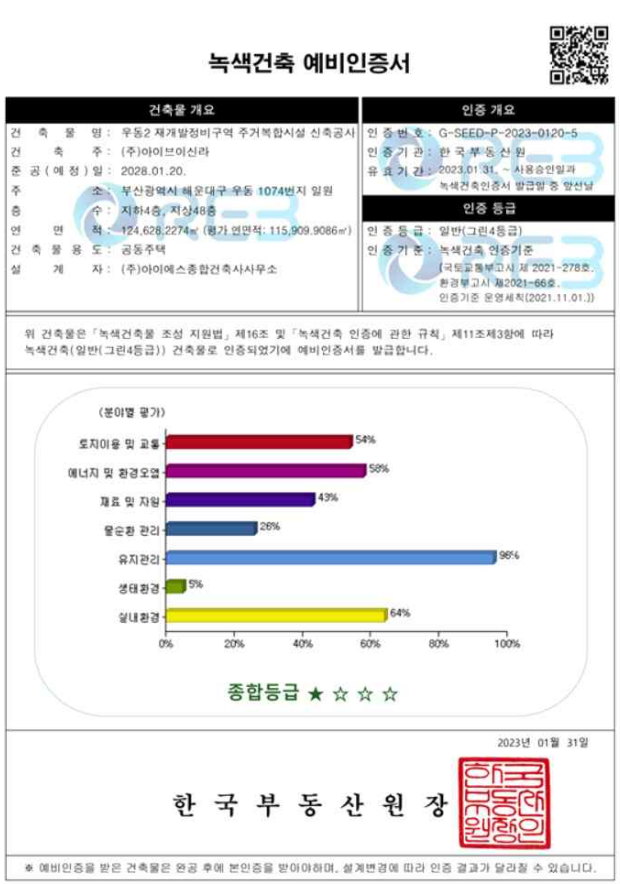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 축 물 명 :	우동2 재개발정비구역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건 축 주 :	(주)아이브이신라
준 공 (예 정) 일 :	2028.01.20.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74번지 일원
층 수 :	지하4층, 지상48층
연 면 적 :	124,628.2274㎡ (평가 연면적: 115,909.9086㎡)
건 축 물 용 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아이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	G-SEED-P-2023-0120-5
인 증 기 관 :	한 국 부 동 산 원
유 효 기 간 :	2023.01.31.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일반(그린4등급)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54%
에너지 및 환경오염 58%
재료 및 자원 43%
물순환 관리 26%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5%
실내환경 64%

0% 20% 40% 60% 80% 100%

종합등급 ★ ☆ ☆ ☆

2023년 01월 31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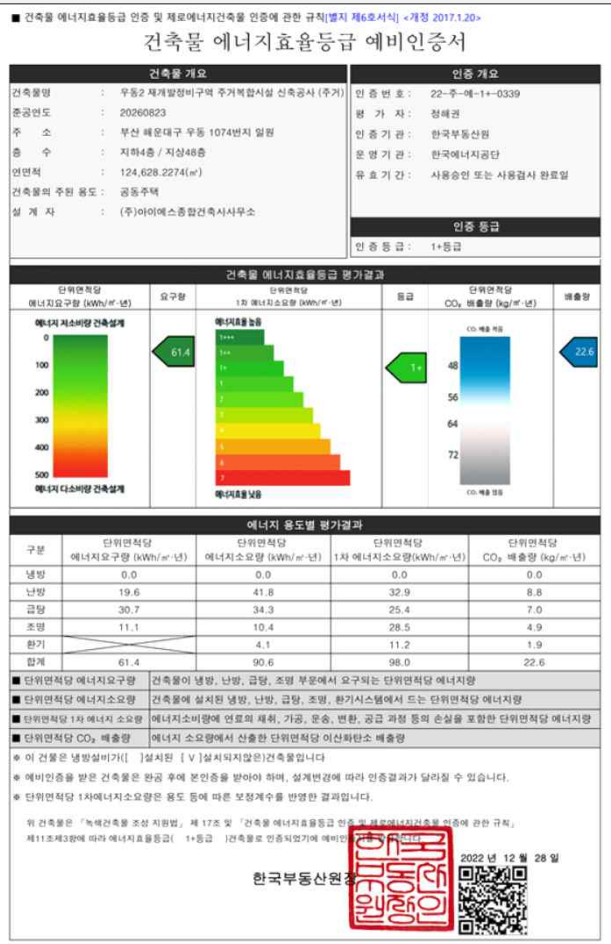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우동2 재개발정비구역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주거)
준공연도 :	20260823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4번지 일원
층 수 :	지하4층 / 지상48층
연면적 :	124,628.227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아이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	22-주-에-1+-0339
평 가 자 :	정해권
인 증 기 관 :	한국부동산원
운 영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 효 기 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61.4		90.6	1+	22.6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9.6	41.8	32.9	8.8
급탕	30.7	34.3	25.4	7.0
조명	11.1	10.4	28.5	4.9
환기		4.1	11.2	1.9
합계	61.4	90.6	98.0	22.6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 년 12 월 28 일

한국부동산원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25-101-0000600 호	**₩ 563,556,11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공급계약서 체결시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회사명	에이앤유씨엠건축사무소(주)	㈜여명기술단	㈜유일방재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127,169,300	846,712,000	161,700,000	693,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자)	시공사
상호	㈜아이브이신라	㈜삼한종합건설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8, 401호(문현동, 삼한사랑채)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108호(문현동, 한일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180111-1022267	180111-0111425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74

■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venuv.co.kr

■ **분양문의 : ☎ 051-544-3131**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